

2022 아동인권보고대회

아동이 마주한 폭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022.11.28. Mon ~ 30. Wed

 YouTube 국가인권위원회

- 별책 -



토 론 문

김민애 (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회장)
김정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형욱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팀장)



토론문



김민애 (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회장)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부터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년 포용국가아동정책에 따른 우리나라 아동학대대응체계 변화 과정에는 아동학대로 사망한 수많은 아동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들이 남긴 유산으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꾸어 놓은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우리사회는 더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동학대문제를 접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그 물음에 실천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상담원들은 어떤 선택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시사점과 제언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바이며, 아직은 현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아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하는 전담공무원들과 아보전 상담원들에게는 아동의 보호권을 실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아동의 의사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와 아동분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현장에서도 아동인권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변화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아보전 위탁법인인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와, 기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침들을 마련하였고 법인 위탁 아보전들은 아동의 청문권을 사업에 반영하여 실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학대문제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은 성인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와 더불어 미성숙함과 의존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 발달권이 부가된 특별한 이슈이기에 오늘 이런 토론 자리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아동인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 오늘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장으로 이곳에 계신 분들께 아보전 현장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같이 힘써주셔야 할 일들과 사회가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년 포용국가아동정책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국가책임제로 아동학대현장조사와 판단, 그리고 사례종결의 업무를 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과 행위자,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분리 보호된 아동들의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지원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수행하는 체계로 변화되었고, 몇몇 지자체들은 20년부터 공공과 민간이 분리되어 업무를 시작하여 3년차에 접어든 곳도 있으나 일부 아보전은 현재까지도 현장조사 지원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지원업무가 끝나는 내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온전히 전문사례관리기관으로 기능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모두 수행했던 아보전에서는 현장조사 업무, 사건처리, 분리보호 등 수많은 공적업무들을 수행하면서 특화된 전문성이 쌓여고, 어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사법적 체계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조사 이후 사례관리업무는 행위자들이 징벌적 패널티 처럼 느끼는 감정을 갖고 자신을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아보전에 대한 반감, 저항,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아동의 생사확인 정도만 겨우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환경과 양육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보전들의 사례개입을 거부하는 당사자들로 인해 상담원들의 감정적 소진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례관리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현장을 떠나는 상담원들을 수없이 마주하고 있

습니다. 아보전 상담원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2.3년이라는 숫자가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기능을 해소하고자 아동학대대응업무의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현장조사 업무를 전담공무원 영역으로 분리하고 아보전들은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심층사례관리기관으로 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당사자들의 동의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사례관리기관들과는 달리 비순응적이고 저항적인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분리 조치는 아동복지법과 처벌법으로 적용되는 법적 이행속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얼마나 수용하는지에 대한 논의일 것입니다.

우리현장에서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일시보호조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및 아동의 후견인의 변경 청구 시 ‘아동의 의사 존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보전의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원칙은 첫째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둘째로 원가정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 셋째로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하는 것과 네 번째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다섯 번째로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원칙에 따라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담, 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 4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도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를 1. 상담, 조사, 사정 2.보호계획 및 결정, 3. 보호조치, 4. 종결, 5. 사후관리 총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욕구조사표, 아동상황점검표를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2단계 보호계획 및 결정에서는 만 12세 이상 아동일 경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사항이 사례결정위원회 보고사항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3단계 보호조치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는지, 보호조치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고, 4 단계 원가정복귀에 대한 아동의견청취를 반드시 해야 하고, 종결계획에서도 아동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법의 아동학대사건에서도 특례법 21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조항이 있고, '보호시설로 인도'할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임시조치 기간 동안 후견인 임무를 임시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때에도, 판사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 아동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명령의 취소나 신청, 기간 연장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시에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할 때 보호시설의 종류, 특징, 시설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반드시 안내하고 '분리보호에 관한 설명 확인 및 피해아동 동의서'를 통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매뉴얼이 있으나 분리보호에 있어서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아동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아보전들의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아동학대발견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보전들이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동학대 발견, 조사, 보호 업무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재학대예방, 아동의 안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가도 이러한 목표를 갖고 아보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1.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에서 무엇이 최상의 이익일까

무조건 아동의 의견에 따라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아동의 안전을 기준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가 있으며, 아동의 생명, 안전, 보호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견보다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우선 해왔습니다.

또한 아동의 의견을 듣는 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법정에서 학대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이로 인해 또다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2. 아동의견의 청취와 안전을 위한 보호

아동분리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때 시설보호에 대해 특히 학령기 아동들은 대부분 거부합니다. 생활환경에서 벗어나는 부담, 핸드폰 사용의 제약, 학교전학 문제 등 피해는 아동이 받았는데 아동이 가정을 떠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동의 가출, 비행행동으로 인한 재학대로 아동이 여러 번 분리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 보호시설로 분리되기를 강력하게 원했을 때, 보호시설에서도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서도 아동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렵다고 강제 퇴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동의견을 반영하여 분리조치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흡연, 음주 문제가 있는 아동 경우는 보호시설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후 보호시설에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3.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가? 충분히 듣기 어려운 업무 환경의 문제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을 보호할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보호시설 또한 아동 친화적인 환

경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담원들의 스킬 부족으로 아동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할 때도 있는데 피해 아동의 특성상 자신의 의견을 내기 어려운 어린 아동이 의견을 자주 바꾸는 경우, 스스로가 자기 의견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견을 내는 경우,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에 대한 의견존중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담원들이 관리하는 케이스 수가 많게는 60건이 넘는 상황에서 아동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4.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 상충

학대피해아동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행위자,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시구군의 학대전담공무원, 보호전담공무원, 아보전 상담원, 피해 쉼터 종사자가 있습니다.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아동과 재결합하기에는 시기상조임에도 전담공무원들의 민원에 대한 민감성으로 행위자의 강력한 민원 제기가 모든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보호전담공무원과 아보전 상담원, 쉼터 종사들은 분리된 아동들에 대한 사례 관리권한을 일부씩 갖고 있으나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아 어떤 기관이 주사례 기관인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5. 판단에 따른 부담감.

사례판단, 원가정복귀판단에서 상담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아보전과 상담원들이 받게 되는 상황이라 아동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동의 안전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동보호 관련 판단의 책임을 특정인, 기관에게 지우는 문화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다양한 사례관리기관 연계의 어려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아동들과 가정들은 대부분 비순응적이고 저항적이라 타기관 연계가 어렵습니다. 분리보호 그 당시에는 행위자들은 아동과 재결합을 위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원가정복귀를 위해 노력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아동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도 어렵고, 사례관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동이 분리 이후 재결합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상담원이 시간을 갖고 해소해주기가 어렵습니다.

7.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위치한 곳에 있는 아보전에서 가족재결합프로그램을 지원

피해아동이 A아보전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분리보호되어 다른 지역 B쉼터로 보호되는 경우 쉼터가 있는 지역 C아보전에서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동과 가정에 대해 정보시스템상의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아동에게는 사례관리자가 변경됨으로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진솔하게 상담원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의 규정과 권한 확대필요

학대전담공무원이 분리조치를 결정하고 난 후 부터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에게 맞는 시설을 찾아 배치하고 아보전은 행위자의 양육태도에 대한 변화와 가정환경을 변화시켜 최대한 아동이 빠른 시일내에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보호전담요원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의 사례관리와 원가정복귀시점을 아보전과 논의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배치 보호전담요원의 숫자도 적고, 매뉴얼도 모호하여 아보전이 알

고 있는 보호전담요원의 역할과 보호전담요원들이 알고 있는 업무가 다른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 아동분리보다는 가해부모 분리방안 필요

가해부모 분리방안이 있다면 비가해 부모나 친척에게 아동이 살던 곳에서 아동을 돌보게 하고 가해부모에 대한 일시거주 시설이나, 감호위탁과 같은 형태의 분리방안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행위자들이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 부양을 위해 이러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 면접교섭권 실시

분리초기부터 가족관계를 유지하여 가정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분리보호된 아동들에게 빠른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아동의 의견청취가 가능하지만, 보호전담요원, 아보전상담원, 시설담당자들의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편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전방 기관입니다.

우리 상담원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성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 하여 아동의 의사와 견해를 확인하고 의사 결정을 도울 때 궁극적인 아동보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아동보호절차의 단계에서 아동의 연령, 발달수준에 맞게 아동의 의견을 듣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자료들이 부족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동이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나 아동의 의견을 중재할 옴부즈퍼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보전상담원들이 그 일을 해오고 있었으나 제3자를 통해 입장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아동보호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으로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동의 의견을 수용하여 배치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영아전담, 청소년 전담 등 아동보호 관련시설의 다양화와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전담쉼터라든지, 피해아동 상황에 맞는 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아동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것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하는 상담원들의 장기근속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고, 이런 인력들에 대한 교육, 훈련, 수퍼비전의 체계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인 부모와 분리되는 경험은 아동들에게 2차적 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분리조치에 있어서 아동인권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현장에서도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아동인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아동보호 전문사례를 다루는 상담원들이 인권감수성을 갖고 아동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항적이고 거부적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사이에서 가족회복을 돕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상담원들의 노력에 대해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 인정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아동과 가족, 아동보호업무를 하는 실무자와 아동학대사건처리를 하는 법조인, 그리고 우리 사회전체가 아동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보장해나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문



김정화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

1. 들어가며

우선, 아동인권과 아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2022년 아동인권 보고대회라는 뜻 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황옥경 교수님의 아동분리조치에 따른 아동인권 보호방안 마련 실태조사는,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분리조치의 근거와 그 절차, 분리이후의 원가정 복귀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아동인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아동분리 시스템을 통하여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법적, 절차적 시스템 마련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 관련 기관에 실질적, 실천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의 입장에서, 특히 교수님의 발제중 아동분리에 있어서 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함) 조항의 연관성 명시와 분절문제의 해소, ② 아동보호관련 담당 부처 간 거버넌스 구축과 서비스 통합 및 협력, ③ 분리조치 과정에서의 아동 참여권 보장 등의 주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의 연관성 명시와 분절문제 해소

- 발제자께서는 아동을 가정 외 분리 보호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으로서 제15조의 보호조치를,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서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이 중첩 적용되거나 혹은 한 조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조치는 각하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응급조치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조치 그리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저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는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아동 분리규정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분리조치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과 업무에 따라,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즉시분리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아동학대처벌법은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의 차원에서 응급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호조치)** 먼저,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을 보면, 2020. 4. 7. 신설된 아동복지법 22조의 4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제15조의 제1항의 보호조치가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보호조치로서, ①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 보호대상 아동을 ② 친족에게 위탁, ③ 가정위탁, ④ 아동복지시설 입소 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소, ⑥ 입양 관련 조치 등입니다.

- (즉시분리조치) 특히, 최근 2021. 3. 30. 시행된 아동복지법 상의 ‘즉시분리조치’에 대해 보면, 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검사의 사후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경우, ③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거나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④ 그 밖에 가정위탁,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가정 등에 일시 위탁하는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5조 제6항).

- (응급조치)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응급조치는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우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①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제지, ②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③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입니다(법 제 12조 제1항).

그런데 응급조치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분리조치를 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여야 하고, 위 신청에 따라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제15조, 사후 임시조치).

위 임시조치로서, 학대행위자에게 ①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예의 상담 및 교육 위탁, ⑥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위탁, ⑦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실무상 일반적으로는 아동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우 피해아동은 응급조치로 보호시

설로 인도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에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상담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하게 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 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①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④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⑤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⑥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⑦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⑧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⑨ 후견인인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⑩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하여 피해자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분리위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퇴거, 접근금지, 친권 또는 후견권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학대현장을 발견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응급조치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과정에서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리필요성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 즉시분리조치 등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처분으로도 분리조치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하여 분리조치를 할 수 있어 여러 분리제도를 통해 피해아동을 중첩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위 분리조치 중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응급조치 후의 긴급임시조치는 그 신청권자가 사법경찰관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의 주체가 법원으로서 각각 피해아동의 분리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반

면,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즉시분리조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피해아동 분리 이외에 사법적 처분으로서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법제14조 제2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보호조치로서 아동을 분리했을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여 피해아동 분리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의 피해아동 보호와는 별개로, 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아동 보호절차가 공백없이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분리규정의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응급조치 효력 기간 문제)**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상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 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검사가 사후 임시조치를 신청한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제3항, 제4항). 그러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이후 피해아동 분리의 효력과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상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는 경우 보호시설에서 피해아동을 계속하

여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임시조치는 기본적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응급조치의 기간 제한 규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응급조치 효력 기간 경과 후에 보호시설에서 피해아동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기간에 대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권자 문제)** 다음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학대처벌법상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연고자에게 가정위탁 등의 분리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 47조).

그런데 법률상 청구권자로 검사(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과정,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판과 보호처분 등의 과정에서 피해아동 분리의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를 할 수 없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사건을 기소, 불기소, 소년부송치하는 경우 이미 행해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게 되어(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6항), 피해아동 보호의 공백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2020. 10.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권자에 검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예에 따라, 검사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로 규정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아동보호관련 담당 부처간 거버넌스 구축과 유관기관의 협력

○ 발제자께서는 분리보호과정, 분리보호 이후 및 가정복귀 이후 등 과정에 따라 아동인권에 기반한 보호서비스 정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제공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위기 가족에 대한 다학제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에 근거한 아동보호체계 작동 및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저는 특히 아동보호체계의 거버넌스 구축 및 서비스의 통합,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을 논함에 있어 사법 영역을 담당하는 검사와 법원의 역할과 협력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검사와 법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처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서비스 제공의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결정하는 데에는 피해아동 보호의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반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중요성)**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에 있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특히 아동학대범죄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제4조)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① 아동학대처벌법 임시조치의 청구,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아동학대사건의 발생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아동학대사건 처분 후 피해아동 및 가족의 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관리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수탁기관장(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교수, 장학사, 교사 등 아동 또는 교육 관련 전문가, 피해자지원 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에서는 아동학대사망, 중상해 등 중요사건, 피해아동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유관기관으로부터 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과 피해아동 보호방안, 재범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논의합니다. 즉 검사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는 피해아동의 심리,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복지담당 기관으로부터는 향후 아동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계획에 관한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태도 및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취하고,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지원,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등에 위 의견을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학대행위자 처벌과 피해아동보호라는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찰, 법원을 포함한 유관 기관 간에 상호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간에 수집된 정보, 제공된 서비스 내용,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처분 등의 정보가 유기적으로 공유되어 각 기관 간에 피해아동 보호라는 역할수행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정보공유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위한 더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4. 분리조치과정에서의 아동의 참여권 보장

- 발제자께서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분리절차에서 아동의견 표현과 청취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 아동학대처벌법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12조 제1항), 위 법 시행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증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령 제5조).
 - 또,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를 할 경우와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일시보호를 함으로써 아동분리조치를 할 경우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15조 제5항).

- 그러나 아동분리에 있어 아동의사 존중에 대한 위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위와 같이 선언적, 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실무상으로도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고, 존중되는 지에 대해서는 담당자마다 차이가 크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와 피해아동 보호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 등의 이유로 대체적으로 아동 분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아동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그 의사가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학대피해를 당한 아동의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의 분리는 재학대의 위협으로

부터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피해아동의 의사뿐만 아니라 개별 사례마다 당해 학대 행위의 내용과 정도, 재학대 위험의 정도, 피해아동의 나이, 학대행위자의 성향과 태도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리조치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 아동이 말을 할 수 없거나, 진지한 의사를 표시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분리 조치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청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데 학대행위자가 동의하였다는 의사를 반영하여 분리조치를 한 경우도 있었으며, 반대로 재학대가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피해아동이 시설의 규율과 통제에 따르기 싫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의 인도를 거부하여 다시 분리조치를 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 아동분리에 있어서 분리를 통한 아동의 안전 보장과 원가정의 유지 또는 복귀라는, 일응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치 중 어떠한 가치에 우선권을 두어 분리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는 개별 사례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아동 분리는 결국 아동복지와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피해아동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연령에 이르렀다면, 분리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아동에게 그 의사를 물어보고, 아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분리조치의 상황과 그 의미, 이유, 예상되는 구체적 환경변화, 보호자와의 연락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분리조치를 결정하거나, 분리조치를 결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결정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아동분리에 있어서 아동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진지한 의사를 청취하여 아동분리여부, 원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가 중요한 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아동 인권의 차원에서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

를 보장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련 규정의 마련과 함께 저를 비롯한 실무담당자들은 분리조치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분리조치 상황 및 이유에 대한 설명, 분리조치에 대한 의견 청취, 의사 존중이 단순히 선언적, 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로서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나오며

이번 2022년 아동인권보고대회 황옥경 교수님의 발제문을 통하여 아동분리 조치에 있어서의 아동의 안전과 원가정 복귀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의 복지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가 관련 법률의 정비와 유관기관 간 협력의 강화, 아동분리조치에 있어 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와 아동인권 보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김형욱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권센터 팀장)

- 본 연구는 학대피해아동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 현장 실무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조사와 현행 법제도 분석 등 관련 연구가 종합적으로 진행되었고, 행정적, 법적 차원의 미비한 부분, 보호조치와 관련한 정서적,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성과는 크다고 생각된다.
- 본 토론에서는 분리조치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당사자의 인권보호 및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특히 모든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아동의 의견존중과 참여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도대체 지원체계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대기업의 서비스 체계까지 요구하는가? 정부와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아동의 참여권리 보장 차원에서 아동의 의견존중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주저와 망설임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하나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묻고, 끝까지 듣고,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계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는 정부와 지자체, 우리 사회의 책무이다.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지원에서 여기까지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 학대가 이루어졌고, 아동은 명백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피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불안 속에 살아야 했고, 그 결과 생존하기 위해 아동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행정적 또는 법적으로 보호자와 분리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분리 이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생활환경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상생활을 해야 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고 치유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 과정 어느 한 순간 한 순간 모두 아동은 직접 당사자가 된 것이다.

- 그래서 모든 행정적, 사법적 과정에서 당사자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관점은 관련 공무원 등 모두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인식의 내용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다. 즉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한다. 아동인권 분야에서 누누이 강조되는 것이지만 분리조치의 대원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규범의 정신에 입각하여 차별없는 지원, 발달단계를 고려한 지원, 관련 조치가 당사자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아동의 의견존중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동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관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 본 연구 제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차별 없는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설배치, 시설 환경에 따른 지역 격차 문제 해소 등, 발달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특성과 상황(형제자매, 장애, 교육문제, 지역 이동 등)을 고려하고, 특히 당사자의 의견존중과 참여와 관련해서는 행정적, 사법적 절차 등에 있어 설명책임과 선택권 부여, 선택권과 관련해서는 담당자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함을 감안하여 당사자 의견에 대한 통찰, 즉 아동의 의견대로 한다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아동의 의견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무분별한 의견인지(이 경우 아동의 의견이 무분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무분별한 의견의 원인은 일회적 설명에만 그쳤는지 등 설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성찰이 필요), 오히려 그 의견 속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구제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통찰하는 힘이 업무부담과 고충, 행정적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나 종사자들에게 요구된다.

- 본 연구의 연구진, 본 연구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종사자 등의 발언 내용을 보면 아동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과정 과정상의 아동의견의 중요성을 직,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결코 쉽거나 단순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례결정위원회 개최는 누구의 시간과 누구를 위한 장소, 아동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청취할 것인지 등 이에 따른 행정력의 투입과 사전 이해, 담당 공무원이나 종사자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이 1989년에 채택되고 1991년에 정부 비준을 거쳤으니 30년이나 지났고, 아동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귀가 따갑도록 듣고 이야기 되어 왔다. 곰곰이 생각해 보라. 조금씩 변화의 모습은 보이나 아동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서적, 물리적 환경이 각 분야, 각 기관 등에서 준비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늘 기획되고 행사에 동원되지 않았던가.
- 분리조치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실효성을 따질 문제도 하나 없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래도 늘 한꺼번에 바뀐 적은 없으니 이 중에서 무엇이 앞으로 개선될지, 가용자원의 최대한과 더불어 더 많은 지원책 마련과 관심, 체계를 정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로 인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 환경이 제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마지막으로 분리보다 일상으로의 회복과 복귀가 더 힘들고 어렵다는 점이다.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 때로는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강제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의 회피나 의지 부족(연구진이 분석한 보호자들이 편함에 익숙해지는 문제 등)가정으로의 복귀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한다. 끝.

2022 아동인권 보고대회



세션 3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보장
- 2022 아동인권 정책 모니터링 사업 연계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보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 모니터링

윤석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 보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 모니터링



윤석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

서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은 아동 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4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모두 27차례 개정(2008.09. 전부 개정 포함)되어 왔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¹⁾로 정의하고, 그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관해서는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등을 통해 규정한다.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 포함)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를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폭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이와 함께 따돌림(1의 2)과 사이버 따돌림(1의 3)을 정의하고 있음.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력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아동이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아동을 보살피는 여타 사람(국가 행위자 포함)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동안,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치나 박대, 성적 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를 금지·예방·대응할 의무가 있다(협약 제19조 제1항).”

이는 다시 모든 아동은 학교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국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²⁾에 따라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13호 일반논평³⁾에서는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이 가능하다⁴⁾”는 전제 아래,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1차 예방(공중보건, 교육, 사회서비스 및 여타의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짐)은 가장 중요하다(para 3 g).”고 강조한다. 이때 아동폭력에는 “아동 특히 아동집단이 다른 아동에게 자행하는 집단따돌림에 의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등 학교폭력”(para 27)⁵⁾이 포함된다. 즉, 학교폭력을 포함한 아동폭력 문제 역시 아동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국가가 강력한 의지로 해결해야 하며, 교육과 사회서비스 등 예방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방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교육적 조치’(일반논평 제13호 para 44)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바탕으로 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제13호), 그리고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 고려, 생명 및 생존과 발달에 관한 권리, 아동 견해 존중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하는 일반논평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2021년까지 모두 25개 일반논평이 발표되었다.

4) 일반논평 제13호 para 3(개관) (a)의 이 내용은 ‘아동폭력에 관한 국제연합 연구의 독립적 전문가 보고’(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for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A/61/299), 제1항(para 1.)를 근거로 제시.

5) 제13호 일반논평 para 27(아동 사이의 폭력) - 이것은 아동, 특히 아동집단이 다른 아동에게 자행하는 집단 따돌림에 의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포함한다. 집단 따돌림은 단기적으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보전과 복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아동의 발달과 교육 및 사회통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소년 폭력집단은 피해자로서 또는 참여자로서의 아동에게 심각한 희생을 초래한다. 비록 아동이 행위자이긴 하지만, 그러한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시도에 있어서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 대응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는 처벌적 접근법을 택한다든지 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하여 폭력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의 권고 등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 황

1. 권고 및 실태조사 결과

1)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5·6차)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 24일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최종 견해)에서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여 집단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조기 발견 메커니즘, 아동 및 전문가의 역량 강화, 중재 절차, 사례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통일된 지침” 등의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 등을 참고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폭력 및 학대신고 장려”를 위한 노력을 권고했다.

2) 학교폭력 피해 응답 증가…초등학교(3.8%), 언어폭력(41.8%) 유형 가장 많아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7%로 2021년 1.1%에 비해 0.6%p, 2019년에 비해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전국의 초4~고3 재학생 전체(약 387만 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진행(4.11~5.8)한 조사의 참여율은 82.9%(약 321만 명)이다.

6) 교육부 발표 자료에는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미포함.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2회 조사를 1회로 축소 진행.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의 순이었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이었다. ‘신체폭력’의 경우 초등학교(14.6%)와 중학교(15.5%)에서, ‘집단따돌림’의 경우 고등학교(15.4%)에서 언어폭력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2차례 실시(4월 전수조사, 9월 표본조사)해 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는 9월에 1차례 전수조사(조사 참여율 82.6%)로 축소 진행되었고, 이 때문에 2022년 실태조사 자료에는 비교치에서 제외됐다. 교육부의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자료(2021.01.21.)에선 피해유형별 비중이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난 점, 학교급별로 비교할 때 언어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사이버폭력은 중학교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한편, 2019년과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비교한 경우, 언어 폭력은 35.6%에서 41.7%로 증가했다. 학교밖 폭력은 2019년 24.3%에서 2021년 40.6%로 크게 늘었다가, 22년에는 34.3%로 감소했다.

2. 2022년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어울림프로그램 통한 학급 단위·교과과정 연계 교육 내실화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폭력예방법(제15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의 책임 아래 진행되며, 동법 시행령(제17조7)에 따라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교육 정책 방향은 2020년 1월 발표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⁸⁾과 2022년 3월 24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는 학생에 대한 예방 교육 외에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5호),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6호)고 규정하고 있음.

2022 시행계획(안)⁹⁾을 따른다. 이밖에 지난 9월 6일 발표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계획에도 예방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대 정책 영역¹⁰⁾ 중 예방 교육과 관련한 영역은 ‘학교 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와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에 해당한다. 관련한 추진 과제는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확대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이다.

이 가운데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은 일회성 교육이 아닌 교과과정 속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연계 강화와 이를 위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2022년에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각 학교에서 연간 8차시 이상 편성·운영하되, 초등 3학년 이상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2~3차시)을 포함하도록 권장했다. 수업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교과연계) 어울림프로그램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아래 그림 참조)을 활용하게 된다.

-
-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정부가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4차 기본계획은 교육부에서 2020. 01. 15 발표함.
 - 9)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으로, 4차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 추진 과제에 더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2021.12.15.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 통해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음.
 - 10) ①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③피해 학생 보호·치유 강화 ④가해 학생 교육·선도 강화 ⑤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대응 생태계 구축이며, 4차 기본계획은 이들 5개 영역별 추진 과제로 구성됨.



▲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opbullying.re.kr/mps)의 ‘어울림 프로그램’ 및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소개 화면.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¹¹⁾은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공감·의사소통·감정조절·자기존중감·갈등해결·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등으로 세분화한 자료를 제공한다. 역량별 자료는 또 학교급별(초·중·고교), 수준별(기본·심층) 구성으로 학교, 학급 특성에 맞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¹²⁾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의 경우, 사이버 특성에 따라 오프라인 상의 6대 역량에 사이버 자기조절과 인터넷 윤리의식 및 활용을 더한 세분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추세변화에 따른 대응 역량을 키우기

11) 교육부는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2022.02)에서 2022년 2월 말까지 어울림프로그램 총 142종(어울림 90종, 사이버어울림 52종)의 개발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1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의 학교급별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운영 예시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지속적으로, 6년간 역량을 고루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반영. 중학교의 경우, 공격성과 적대감 등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발달시기를 고려해 타인에 대한 친밀감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 고교는 입시 준비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철저히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위해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개발·홍보와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체험·놀이형 교구 개발(초·중등 각 1종), 민간 협업을 통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플랫폼 구축 및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지정·운영 등을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으로 시행 중이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초등 학년군별(초 1~2/초3~4/초5~6)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 보급도 신규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밖에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22.1.17. 개정, 3.1. 시행)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 민감성¹³⁾ 향상 정도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하도록 했다.

2) 어깨동무활동 통한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제4차 기본계획은 일회성 집합 교육 형태의 예방 교육을 학급 단위로 전환하고, 학생 참여·체험 중심 활동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3차 기본계획과 연속성을 갖는 예방 교육 정책으로는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과 함께 어깨동무활동을 꼽을 수 있다. (왼쪽 그림 참조)

어깨동무활동은 학생이 주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



▲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topbullying.re.kr)의 어깨동무활동 소개 화면.

13) 타인 이해 및 정서적 공감 정도, 의사소통 기술 및 타협과 설득 능력, 갈등 상황 인식 및 합리적 대처 능력, 소속감과 자신감, 정서 인식 및 부정적 정서 조절능력 향상 정도, 언어 사용 습관 정도 등.

고자 도입된 프로그램¹⁴⁾으로,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에서도 또래가 참여하는 유사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어깨동무활동은 학교의 특색에 맞춰 또래활동(또래활동 프로그램, 또래상담), 사이버폭력 예방활동, 언어폭력 및 언어문화개선 활동, 학교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가운데 또래활동 프로그램은 학생 주도적 또래관계 개선과 올바른 또래 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친구알기, 친구와 소통하기, 친구되기 등의 세부 프로그램을 6차시로 구성해, 학교급별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지원 학생을 선발해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또래상담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기획하고 예방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기 위한 학교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인 ‘학생 서포터스단’을 2021년 21개 팀(초등~고교)에서 2022년에는 34개 팀으로 확대 운영해, 학생자치회와 동아리 등이 중심이 되어 교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활동 캠페인 등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3) 학교폭력예방 교육의 주체로 학부모 인식 제고¹⁵⁾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학교예방법(제15조 2항)에서부터 교직원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예방법과 시행령에서는 또 학부모 교육에는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는 이에 따라 초등 저·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 학부모용 어울림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각 프로그램은 학생 대상 어울림프로그램과 같이 6대 역량별로 2차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부모 원격 콘텐츠로 ‘공감 및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존중감’, ‘자녀의 감정을 읽는 대화기술 감정코칭하기’, ‘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및 갈등해결’ 등 모두 5차시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학부모 On누리’(www.parents.go.kr)를

14)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어깨동무활동 소개 내용 참조

www.stopbullying.re.kr/board?menuId=MENU00390에서 2022.10.31. 인출.

15)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에서 밝힌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 방향 제목과 같음.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클릭! 미디어리터러시(5차시)’ 콘텐츠 개발과 함께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 학부모(보호자)의 자녀(아동) 이해와 학교폭력 예방 이해를 위한 학부모 소식지(분기별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 2020년~)도 지속해서 배포한다고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문제점

앞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관련한 현황에서는 최근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제4차 기본계획 및 2022년 시행 계획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예방교육 정책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은 학급 단위로 8차시 이상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깨동무활동을 통해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기별 변화로 볼 때, 2020년부터는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방향이 개인 역량 강화와 학교 문화 조성으로 구별되고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어울림프로그램이, 학교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어깨동무활동이 중심(박지현, 2021)이라는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

학교뿐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예방 교육 정책의 목표로 정한 것은 당연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부합한다. 이를 위한 교육 정책 즉 교과과목과 연계한 어울림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학급 단위 교육의 내실화 및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학생 참여·체험형 활동 강화는 기획대로 제대로 진행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망의 씨줄과 날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및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가운데 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수정되었는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는 가운데 아동 모두가 차별 없이 권리의 주체로서 학습은 물론 학교폭력 예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의 미비로, 학교폭력 예방 문화로 정착시키기까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1. 부족한 교육 시간

현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가장 큰 한계는 교육 시간의 문제이다. 정부는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통해 기준 시수를 학급별로 연간 8차시 이상 편성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1년에는 연간 6차시였다.) 이와 함께 학교급별 운영 예시를 통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어울림프로그램의 지속적 적용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 개개인의 학교폭력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속적인 교육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최소라고는 하지만 연간 8차시로선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상황은 초등학교보다 결코 나을 수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과연계 어울림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지만 이런 노력만으로 교육 시간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 시간 부족은 단적으로는 입시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비롯한 문제다. 이 때문에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 달성과 이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학교 교육 현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교육 과정과 학교폭력의 인과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김철, 2022)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이 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교 현실이 '차이를 차별로 구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러한 분위기가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정에 기반한 것이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도 아동의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제13호 등)을 참고해 널리 퍼져있는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학업 성적 등과 관련된 차별을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를 반영함에 있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존중, 아동 견해 존중 등의 일반원칙과 아동의 놀 권리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2. 개인별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 프로그램 부재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등을 토대로 올해부터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 정도를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록과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학

교생활기록에 학교폭력 민감성을 평가해 기록하는 것만으로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어울림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구성되었더라도 교과목과의 연계로 인한 부작용, 즉 수업을 받은 학생이 어울림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6대 역량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적을 위한 교과 수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도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권장했지만 강제력이 없기에 이를 담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역시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어울림프로그램이 학생 개개인의 민감성 정도를 고려한 수준별 자기주도적 학습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과 현장 교육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예방교육과 참여활동 간 연계 부족

올해 교육부는 학생 참여·체험 중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학교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효과성뿐 아니라 아동 인권 당사자로서 아동의 참여권 실현이란 측면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래상담 운영학교는 2018년 8205개교에서 2021년에는 8012개교로 줄었기 때문이다. 또 학생 또래상담자는 2018년 36만 7876명에서 2021년 30만 1985명으로 감소했으며,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2018년 6219명에서 2021년 3319명으로 크게 줄었다.

교육부가 학생 주도적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꼽은 ‘학생 서포터스단’은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 일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이며, 시범운영학교는 2021년 21개에서 2022년 34개로 증가하지만 ‘강화’라고 내세울 정도의 숫자로 보기 어렵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민간 협업으로 지역단위의 문화예술공연이나 영상제작, 캠페인 등 학생 중심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투게더프로젝트 운영 134개교, 뮤지컬 공연사업 7개 지역, 뮤지컬 연습 등 다목적 동아리방 조성 지원 8개교 등에 그

친다. 교육 시간의 부족과 더불어 실질적인 학생 참여 활동 역시 제한적으로 부족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개인별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이나 학생 참여 활동과 관련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즉 어울림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으로 습득한 아동 권리 이해와 자아 및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권감수성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실천의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학교폭력 민감성을 키워가는 순환적인 학습과 참여 활동이 정책적으로 연관을 맺고 제시되지 못한 이유라 판단된다.

정책의 부재뿐 아니라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지 않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성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교육 현실 역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천적 참여 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벽이 될 수 있다.

4. 형식적 학부모 교육과 현장의 어려움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부모 교육을 학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이러한 의무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학교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 이 결과 학부모 교육은 여전히 집단교육과 소식지 등을 통한 방식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진 못한다.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차이가 있으며 학부모 가운데 일부만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집단교육에 참여하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역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 학교급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지속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어울림 프로그램을 4년 이상 지속한 학교는 신규운영학교나 2~3년 운영한 학교에 비해 6대 역량 평균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운숙 외, 2020).

학부모 교육이나 학교장의 의지와 관련한 문제를 교육부나 교육청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부 해결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충분한 예산 지원도 없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일지라도 실제로는 학교에 부담만 전가하는 탁상행정으로 그치고 실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개선 방안

1. 어울림프로그램과 아동 참여 보장하는 어깨동무활동 간 연계 강화

이제까지 살펴본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를 종합하면,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정책이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나 방향성과 같은 큰 변화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단기적으로는 세부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세부 정책에 있어서는 학생 다수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체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인권 존중 중심의 예방교육과 참여 활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다 많은 학교에서 보다 많은 시간에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보다 많은 학생의 참여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은 필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생의 참여 활동은 앞서 본 것처럼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분절화되어 제시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어울림프로그램과 어깨동무활동은 각각 적용 대상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학교폭력 민감성을 평가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현재 상황에서 개인별, 학년별 핵심 역량이 단계별로 발전될 수 있는 교육과 참여 활동 연계 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아동 인권적 요소 그리고 인권 감수성을 고려할 것도 제안한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는 현재와 같은 교육 시간의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이론적 예방 교육만으로 지켜질 수 없다. 교육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육과 참여 활동이 연계된 프로그램은 유용하다. 교육과 이를 바탕으로 알게된 지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공동체(현재의 교육 상황을 고려할 때, 학급이나 모둠 또는 동아리 단위)에서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규칙을 만들어 실천하고, 회의를 통해 예상 가능한 갈등 상황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 등을 논의하는 등의 참여 활동을 생활 속에서 전개하는 것이다.

시민 단체와 기초 지자체 등에서는 이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측면에서 아동 정책 마련을 위한 아동 주도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으로 2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역시 아동의, 아동을 위한, 아동에 의한 참여의 장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다.

교육과 참여 활동의 연계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학교폭력 민감성을 발달 단계에 맞춰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맞춰 학년별, 학교급별 교육과 참여 활동을 발달시킴으로써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뿐 아니라 아동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키워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권감수성의 실천의지가 향상되면 학교폭력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2. 정보제공자, 지지자로서 학생과 함께하는 학부모 활동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과 교육의 연계에서 학부모의 역할도 필요하다. 학부모가 지지자이자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로 관련 정보를 담임 교사 등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문제처럼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활동의 참여 역시 쉽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수동적 교육 참가자가 아닌 정보 제공자이자 지지자로서 학부모가 자녀들의 권리 옹호 활동에 함께하는 경험은 자발적 의지를 자극할 뿐 아니라 교육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 학부모의 지지와 퍼실리테이팅 속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참여 활동 간의 연계는 학생 인성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문화 정착의 첫 단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2019)¹⁶⁾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문화’로 ▲학생, 학부모 및 관계자 집단 모두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문화 ▲학생 인성 중심의 문화 ▲학생 인권 중심의 문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학교폭력의 관계자로서 스스로 갈등 상황에서 아동 권리를 옹호하는 실천적 인권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학급 단위로

16) 2019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용역으로 진행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중 설문 결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스로의 생활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권 옹호에 대한 개개인의 효능감과 실천의지 고취 등은 학교폭력 민감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1).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교육부 (2022).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
- 교육부 (202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
- 교육부 (2022).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제1차~6차) 자료집.
- 국가인권위원회 (2021).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년 개정판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 평.
- 국무조정실 (2022).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교육환경에서도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김철 (2022). 노르웨이 올베우스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OBPP)에 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8권 제2 호, 243-284p.
- 김하영, 최석환, 심승보 (2022). 국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분석연구. 학구체육과학회지, 제31권 제2호, 487-497p.
- 권순정, 강하영 (202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의미: 인권,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평화의 학교문화 전환.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제31호, 1-29p.
- 박지현 (2021). 학교폭력 정책 및 법률의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변화와 과제. 월간교육정책포럼. 제337호, 14-19p.
- 성윤숙, 구분호, 김현수 (2020).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의 효과적 적용방안 탐색. 청소년학연구, 27(2), 363-383p.
- 장명선, 김용수, 박수희, 박현미, 이상균, (2019)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모니터링보고서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본부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모니터링 보고서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 본부장)

1. 들어가며

학교폭력은 개인과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의 각 단위에서 상호간의 개연성 없이 발생하는 사회현상이 아니라 각 요인들의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이다. 학교폭력 제도는 그 실태와 양상, 사회적인 여론에 맞추어 2004년 관련 법제정 이후 여러 차례 제개정을 통해 보안 되고 재정비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학교폭력의 대응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플랫폼마다 독특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자녀를 잃은 고통으로 부모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고통은 개인을 넘어 학교와 가정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과 교육, 분쟁조정을 통한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¹⁾. 학교폭력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족의 일상회복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폭력 문제해결 과정은 피해학생의 보호보다 사안 처리 중심의 과정으로 피·가해학생의 판정으로 귀결되어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 내에서 피해학생 보호와 관련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제도와 현황 및 대안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최근 학교폭력 실태

가. 최근 학교폭력 이슈

최근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작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명인(운동선수, 연예인)들에 대한 과거 학교폭력 피해 폭로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실상 이미 성인이 되어 버린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가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면서도 폭로가 계속 되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깊은 트라우마와 고통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행인 점은 얼마 전 법무부에서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써 이에 대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인격권을 민법에 적용하겠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해 7월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광주지역 한 지역에서는 학교에 간다던 학생이 인근 야산에서 사체로 발견되었고, 강원지역 한 지역에서는 사이버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광주지역 사안의 경우 장례식 도중 아들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제보 받았는데, 시신 운구를 맡기로 한 학생들이 가해자였음이 뒤늦게 알려지며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1만 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강원지역 사안 또한 사건 발생 2주 전 피해학생의 자해 사실을 교사가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알려지며 진상규명과 학교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5만 여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는데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사이버폭력이 그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렸다.

나.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실태조사²⁾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설립 이후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양상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매해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2) 2022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021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의 초·중·고 학생 6,025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보면[그림-1]과 같이 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해 온 학교폭력 피·가해율은 최근 사이버폭력 및 성폭력, 저연령화 등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은 7%로 전년대비 0.3% 상승하였고, 피해유형은 사이버폭력(31.6%), 언어폭력(20.8%), 따돌림(16.1%), 신체폭력(11.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5.3%에 불과했던 사이버폭력 피해율은 2020년 16.3%, 2021년 3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피해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재단 상담사례에 따르면 익명 SNS앱, 랜덤채팅, 배달서비스, 공유형 교통수단, 중고거래 앱 등 다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1] 푸른나무재단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 피해 후 도움 요청'을 묻는 질문에 19.3%가 '피해 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요청해도 잘 해결 될 것 같지 않아서'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피해학생의 34%는 피해 후 가장 필요한 것을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 반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피해·가해·목격 학생 모두 '주변 어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1순위로 꼽았다.

3. 피해학생 보호 관련 제도 현황 및 대안

가. 피해학생 보호와 일상회복 지원

1) 제도의 현황

푸른나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53.6%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고, 그 중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느꼈다는 학생도 26.8%나 되었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긴 시간 트라우마로 남는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학폭 미투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실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폭력 장면에 대한 반추와 또다시 폭력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 등으로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며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초·중·고교에는 피해학생의 심리안정과 보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두게 되어있다.³⁾ 아래의 [그림-2]는 지난해 발표된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인데 전국 평균 32.3%로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관련법에 의거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즉시분리, 긴급보호조치, 관계회복 프로그램, 학교전담기구,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와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과정 중에는 피해학생의 요청에 따라 시행되거나 학교장 의지, 학교의 여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자원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또한 피해학생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보호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로 학교의 미온적 태도, 사안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이해를 위한 정보의 제공 부족, 보호자 또는 학생 면담 시 부적절한 대처, 비밀보장의 원칙이 깨져 목격자가 방어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끝내 학교를 불신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1항

[그림-2] 전국 지역·학교급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보도자료/2021.10)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계		
	학교	교사	학교	교사	학교	교사	학교	교사	배치율 (%)
서울	605	142	387	203	317	188	1,309	533	40.7
부산	303	47	171	110	138	71	612	228	37.3
대구	230	43	123	98	93	31	446	172	38.6
인천	256	54	139	72	125	63	520	189	36.3
광주	154	41	90	48	67	32	311	121	38.9
대전	148	45	88	40	62	33	298	118	39.6
울산	121	21	64	43	58	21	243	85	35.0
세종	51	10	26	9	21	11	98	30	30.6
경기	1,305	243	640	416	481	228	2,426	887	36.6
강원	348	46	163	43	115	44	626	133	21.2
충북	258	45	125	37	82	52	465	134	28.8
충남	411	57	183	65	116	61	710	183	25.8
전북	419	69	210	75	131	52	760	196	25.8
전남	429	65	250	66	144	66	823	197	23.9
경북	473	95	261	86	184	74	918	255	27.8
경남	506	89	264	105	190	79	960	273	28.4
제주	112	16	44	17	29	18	185	51	27.6
계	6,129	1,128	3,228	1,533	2,353	1,124	11,710	3,785	32.3

2) 정책 제언

2014년 미국교육통계청의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학교상담자는 총 102,813명으로 학생 491명당 1명의 학교상담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에 반해⁴⁾ 국내의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은 위와 같이 미비한 실정이다. 2013년 중·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심의전수가 감소되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는데⁵⁾ 이것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와 학교폭력 상담전문가를 충원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학교 내 전문상담인력(학교폭력 상담 전문가)배치 확대 및 이들의 학교폭력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현재 피해전담기관은 현재 전국에 3개소(서울, 대구, 광주), 기숙형 시설은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전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상담 및 치유 등의 통합적 개입이 가능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확대 설치하여 피해학생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보호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학생 회복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개발 및 지역별 회복 수준을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안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사안처리 전 과정 및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보호를 위한 권리 등 관련한 정보제공 의무를 보완 할 필요가 있다.

또 사안 발생 초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사안처리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해 바우처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긴급보호조치 또한 현행 1,2,6호에서 3호 조치까지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가 시급한 경우 사안처리 이전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성현모, 이상민(2017). 학교상담제도의 국제비교연구. 상담학연구, 18(5), p.266.

5) 김현주, 김춘희, 손은령(Son Eun young)(2018). 학교폭력과 전문상담교사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나. 학교폭력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관계회복)

1) 제도의 현황

현재 학교폭력은 사안 발생 시 4가지 요건⁶⁾이 모두 충족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학교장자체해결로 사안이 마무리 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된다. 두 개의 과정 중 어떠한 방식으로 사안이 처리되더라도 이와 상관 없이 피·가해학생 간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푸른나무재단의 상담 사례를 보면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고, 가해학생 역시 피해학생에게 반성과 용서의 마음을 전달 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⁷⁾에서 관계회복은 중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3⁸⁾에서는 필요한 경우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판단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도 관계회복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 과중,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 한정된 교내 자원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정책 제언

지난 10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접수 건수는 △2020학년도 8,357건, △2021학년도

-
- 6)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7) 푸른나무재단 2022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中
 - 8)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5,653건, △2022학년도(~8월) 9,796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학교장 자체해결 건수도 △2020학년도 17,546건, △2021학년도 28,791건, △2022학년도(~8월) 20,661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⁹⁾ 적지 않은 수치이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하는데, 이점에서 처분중심의 행정적 처리 과정과 별도로 피해학생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하여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과 용서의 마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절차로 2차 가해 등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 즉시 당사자 동의하에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한다.

특히 현재 학교장자체해결로 사안이 종결되는 연 2만 건 이상의 사안들은 별도의 과정이 없이 교육적 조치가 부재한 상태로 마무리되고 있다. 이는 피해학생이 원하는 해결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해분쟁조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데,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학교폭력 사안발생 즉시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교육 현장의 대응력 향상을 목표로 교사 대상 관계회복 관련 전문교육 제공하고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한다.

다. 사이버폭력의 증가에 따른 보호

1) 제도의 현황

최근 새로운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31.6%로 전년 16.3% 대비 2배, 2019년 5.3% 대비 6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푸른나무재단 상담 사례에 따르면 익명 SNS 앱에서는 조건 만남 등 허위 게시물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 배달서

9) 신아일보, 2022.10.18

비스 앱에서는 다량의 음식을 주문하고 대면결제를 신청하여 피해학생에게 배달시켜 피해를 주는 사례, 공유형 교통수단 앱에서는 전기 킥보드, 공유 자전거 등을 피해학생에게 대리결제를 강요하여 착취하는 사례, 중고거래 앱에서는 가짜 명품을 강매하거나 인근 지역임을 이용하여 공갈, 협박하는 사례 등 디지털 플랫폼 마다 독특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폭력은 그 형태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피해 증거가 모호하거나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은데, 이 경우 사안접수 및 조사에 제약이 생겨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지연이 발생된다. 현재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가해자 및 책임자 규명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감시체계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있어서는 기업에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청소년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내외 사회의 비난 여론이 적지 않은 지금, 이들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정책 제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폭력의 정의에서는¹⁰⁾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로 사이버폭력을 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개념의 재정의 필요에 따라 현재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 되어 있는데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개념 정의 등 조속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푸른나무재단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사이버폭력 관련 학술연구를 통해 실태, 법제도 연구, 진단도구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국내법에 관한 쟁점과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¹¹⁾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푸른코끼리 청소년 사이버폭력 관련 국내법 개정안 연구. 푸른나무재단

사이버폭력은 그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심각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피해증거가 모호할 경우에도 사안처리와 별개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회복 지원을 위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사이버폭력 피해 시 신고 접수 및 조사와 별개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확충, 피해회복을 위한 디지털 피해기록 삭제, 일상회복을 위한 치료 및 교육 제공 등 사이버폭력 피해 보호조치의 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구호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시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플랫폼 사용 시 이용자의 의무사항이 있는 것처럼 이용자가 사이버 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이 매번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소년 가입자 보호 방안, 플랫폼 사업자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관련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간·기업·정부의 공동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라. 학교폭력 사회안전망 구축

1) 제도의 현황

학교폭력이 벌어진 당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고통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학생의 가족 구성원들의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을 도움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에 피해학생과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도울 수 있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이 지역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미래의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기본 단위인데¹²⁾, 최근 해외 연구들에

12) 김교정 (Gyo Jeung Kim).(2008).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복지 서비스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2 29-48.

따르면 지역사회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의 효과는 법적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보안 조치보다 높게 나타났다.¹³⁾ 국내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제4조¹⁴⁾와 제9조, 제10조 등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안전망 측면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 6¹⁵⁾을 근거로 2012년 각 학교에 배치된 이후 일진 등 폭력서클 해체, 성인폭력조직과의 연결고리 차단, 교내 폭력문화 근절 활동 등을 통해 실제 학교폭력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였고, 현재도 학교폭력 징후 발견 시 상담, 사안 접수 후 학부모 상담, 당사자 간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해결 등 학교폭력 문제해결 및 사후관리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은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총 1,0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내 초·중·고등학교는 1만여 개교로 1인당 평균 10개교 약 5,000여명 정도의 학생을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기에 학교 및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2) 정책 제언

학교폭력 문제는 전 사회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학생의 일상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실제적인 생활밀착형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과 가정의 치유를 돕고 학교폭력 예방 및 지역 내 비폭력 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제10조와 시행령 제5·6·7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

13) Lesneskie Eric, Block Steven. "School Violence: The Role of Parental and Community Involvement" JOURNAL OF SCHOOL VIOLENCE : 426-444.

1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15)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어 지역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와 책임과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가족구성원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이 보호조치 1·3호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비용이 지원되고 있지만¹⁶⁾,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자매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및 양육 코칭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률 감소에 기여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배치가 학교·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의 전문성 확보,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을 속히 증대할 필요가 있다.

마. 사후관리 개념의 재정의 필요

1) 제도의 현황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사후지도’라는 용어로 피해학생 적응 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2¹⁷⁾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1조¹⁸⁾에는 ‘사후조치’라는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북과 법률을 보면 피·가해학생의 사후지도를 어느 시점에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부족하다.

16)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참조.

17)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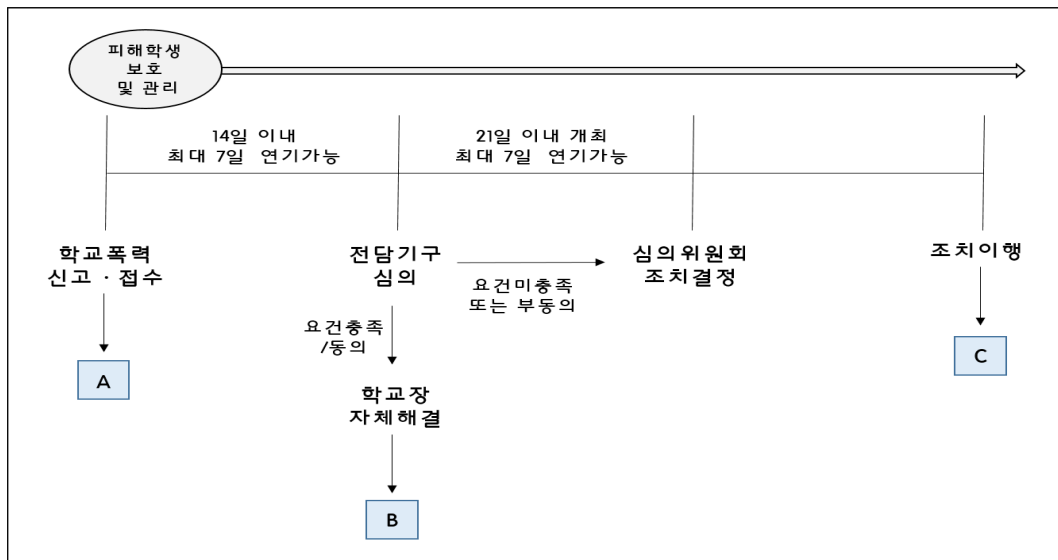
18) 제11조(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그림-3]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간략화 해놓은 것이다.

현재 사후관리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조치이행 단계 이후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후관리는 범위를 확대하여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3]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사안처리 과정을 보면 학교폭력 신고·접수 이후 사안조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특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 신고·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신고가 이루어진 학생 또한 A단계부터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안처리 과정과는 별개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사후관리 단계를 적용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보호와 회복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두번째 B단계의 경우는 학교장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하여 학교장자체해결로 끝난 경우이다. 푸른나무재단의 상담 사례를 보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자체해결로 끝난 이후 학교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학교장자체해결로 끝난 사안일지라도 피해학생의 일상회복과 피·가해학생의 관계회복을 위한 별도의 사후관리 지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절차상 많은 경우에는 C단계를 ‘사후관리’로 인식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후에도 피해학생 적응 및 회복의 정도 등 예후를 살피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지원 범위, 형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받기까지는 최대 7주가 소요되고, 조치가 나오기까지 피·가해학생이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학생은 등교를 하지 못하거나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등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후관리의 개념을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인식하여 A, B, C단계별 사후관리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마치며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이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일 것이다.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용서와 화해가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구조에서는 피·가해자 판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피·가해학생 모두를 위한 분쟁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전 사회가 힘을 모아 피해학생의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변화하는 양상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방안 및 분쟁해결 및 관계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

푸른나무재단이 설립되던 1995년에만 해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이란 용어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8년이 지난 지금, ‘학교폭력’은 낯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실태와 양상이 다변화되고 고통 받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을 최우선에 두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학생과 그 가정의 회복과 치유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아동권리옹호실 실장)



토론문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동국대 이은주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제출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얼마나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혹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지를 2021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성과평가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보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조정희 선생님의 발표문, “아동인권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발표문도 잘 읽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연구를 기반으로 어떠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 발표의 내용에 추가 의견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을 두서없지만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동 인권 상황은 긴 시간의 흐름에서 보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중심에서 아동의견표명이라는 이름이든, 아동청문이라는 이름이든 참여권이 아동 관련 여러 영역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만 봐도 그러합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표1>)를 보면, 대체로 가정, 학교, 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청소년 자신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느끼는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중 하나로 2024년 목표치가 80.0%임을 감안하면, 2020년에 이미 목표를 달성한 셈입니다.

〈표 1〉 아동 청소년 인권을 존중해주는 정도(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비율 합산)(%)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2019	95.6	91.5	77.1	81.1
2020	96.3	95.6	83.7	82.3
2021	96.6	95.2	82.4	81.7

그러나 아동 인권을 이야기할 때면, 가정에서는 친권, 학교에서는 교권, 아동복지 시설 등에서는 종사자 인권 등을 대립 개념으로 언급하면서 아동 인권 존중(보장, 증진)을 다른 권리에 대한 침해로 보는 주장도 만만찮습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권리 對 친권자의 권리보다 학생 인권 對 교권 논쟁이 더 첨예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의 목표’에 관한 일반논평 제1호에서 아동이 교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황옥경 외, 2015)했음에도 말입니다.

친권을 자녀를 보호 양육할 부모의 역할, 의무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듯,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교권은 학생이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의 역할, 직무,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교사의 직무수행 및 행동요령에 대한 자세한 업무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직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교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학생 인권 축소(제한)를 통해 달성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인을 학생인권 조례나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쯤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교육의 역할(기능)을 다시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인 구도로 이해하는 틀 안에서 학생은 아동 청소년은 인권을 배울 수 없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교육의 목표를 다시금 되짚어볼 때입니다.

제29조. 교육의 목표

당사국은 아동 교육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개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내포된 원칙(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개발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 문명에 대한 존중의 개발 ==> 또래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황옥경 외, 2015)
-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보건, 성교육, 정치, 예산, 시민권, 사회적 관계와 같은 less academic 주제를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강조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개발

작금의 사정을 보면, 아동 인권은 어른이 허용하는 인권, 어른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인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른이 정한 선을 넘어서는 것은 어른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순하며 때로는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적 권리 영역에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3조 표현의 자유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도,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앙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에 관한 권리

제15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해져서는 안된다.

그동안 아동권리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면(국가의 적극적 역할)에서 사회권적 권리를 더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자유권적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아동의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어른들의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이를 봐도 어른이 정한 아동 인권의 범위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동은 성장발달하는 과정에 있으며 보호자를 비롯한 사회, 국가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진화하는 능력, *evolving capacity*)를 고려하여 아동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아동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아동의 연령, 정신적 성숙도, *evolving capacity*를 고려하여 더 섬세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아동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은 인권의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찰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어른의 시선에서 정하지는

았았는지 따져 물어야 할 때입니다.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을 인식한다면, 인권을 알고 존중하는 책임있는 시민으로 아동이 성장하길 바란다면, 어리다는 이유로(다른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로 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아동 최상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보다 아동 인권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동 인권에 대해 반감을 갖는 어른, 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동 인권이 어른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에서 점점 심해지는 차별, 혐오, 폭력을 보면서 우리 아동 청소년이 배울까 두렵습니다.

어른이 인내(?)하는 수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동 권리를 제한할 궁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어른의 책무입니다. 더 심해지는 차별, 혐오, 폭력의 사회로부터 아동을 잘 지키는 길은 아동 권리를 제한할 꿈수(제일 손쉬운 해결책 같지만, 후유증이 큰 시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관점, 인권 중심의 관점을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동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혹은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 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김명지·유설희·최홍일(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옥경·안동현·이호균·강현아·홍관표·현소혜·정선영(2015).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토론문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아동인권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

2022 아동인권보고대회

2022. 11. 30.

강정은 변호사



Copyright(C) DUROO All rights reserved

순서

1. 들어가며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4. 나가며

1. 들어가며

- 2022년 아동인권보고대회 추진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및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인권위요? 가장 마지막이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 청소년한부모 인터뷰 중

1. 들어가며

■ 아동청소년인권과 주요업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제1항,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5항

제9조(침해조사국) ⑤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7. 24.>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증인의 보호
6. 아동·청소년 관련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협력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행 점검

- 조정희 과장님 발제문 제시 “아동인권모니터링” 및 “조약기구 대응활동 강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2003)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은 아동의 권리준종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이행의무 준수와 이행과정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이다.” (para. 65.)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이행 점검

- 이은주 교수님 발제문 “2021 추진성과”로 제시된 항목 → 구체적 검토와 점검 필요
 - 예) 입법예고, ~법 개정추진, 연구용역 실시, ~토론회 참석
 - 예) 아동복지사업 지역적 불균형 개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문제, 2022. 11. 28.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의결 등)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국가인권기구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 유형의 목록 (예시적, 열거적 X)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2002) <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para. 19.)

- (a) 진정 혹은 그들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 그들의 임무 범위 내 아동 권리 침해의 모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
- (b) 아동 권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
- (c) 국가 당국의 요청 혹은 그들 스스로의 발의에 의해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 권고 및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표하는 것
- (d) 아동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법과 관행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
- (e) 국가의 입법 및 규제, 관행과 “아동권리협약” 및 협약의 선택의정서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타 국제 인권 문서의 일치를 증진시키고,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공식·사적 단체에 조언을 제공하는 등 그들의 효과적 이행을 증진시키는 것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국가인권기구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 유형의 목록 (예시적, 열거적 X)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2002) <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para. 19.)

(f) 국가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국가 경제 및 발전 계획을 설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도록 보장하는 것

(g)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계가 적절하게 분류되고, 기타 정보가 정기적으로 수집되도록 하면서 아동 권리의 실태를 감독하고, 정부의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고 검토하는 것

(h) 모든 관련 국제 인권 문서의 비준이나 가입을 장려하는 것

(i)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협약 제3조에 따라, 아동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의 영향이 개발부터 실행 그리고 그 이상에서까지 신중하게 고려되도록 하는 것

(j) 제12조에 비추어, 아동의 인권에 관한 사항과 그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아동의 견해가 표현되고 경청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국가인권기구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 유형의 목록 (예시적, 열거적 X)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2002) <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 (para. 19.)

(k) 아동들로 구성된 조직을 포함한 아동 권리 비정부기구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한 국내 입법과 국제법률문서의 발전에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하고, 촉진하는 것

(l)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론 매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 분야의 연구 및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고, 후원하는 것

(m) 당사국에게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협약의 원칙과 규정이 널리 알려지도록 할 것"을 의무 지우고 있는 협약 제42조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 대중이 협약의 규정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그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감시하는 것

(n) 학교·대학의 교육과정 및 전문가 집단 내에서 아동의 권리를 통합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도울 것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국가인권기구가 실행해야 하는 활동 유형의 목록 (예시적, 열거적 X)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2002) <아동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para. 19.)

- (o)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증진 시키는 것에 더해) 아동에 특히 초점을 맞춘 인권 교육에 착수할 것
- (p) 국가 내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밝거나, 아동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할 것
- (q) 적절한 경우, 법원에 제소하기 이전에 중재 혹은 조정 절차에 관여할 것
- (r) 적절한 사건의 경우, 법정 조연자 혹은 소송 참가자로서 법원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
- (s) 당사국이 “아동 돌봄 및 양육에 책임이 있는 기관, 서비스, 시설이 특히 안전 및 위생의 영역에서, 적합한 관리 감독은 물론 그들의 직원의 수나 적합성에 관련하여 관계 당국이 설정한 기준을 따를 것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협약 제3조에 따라,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위해 소년원(그리고 아동이 교화 혹은 처벌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모든 장소), 돌봄 기관을 방문할 것
- (t) 상기에 따르는 기타 행위들을 수행할 것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9)

- 독립 모니터링

12.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권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
- (b) 아동권리위원회의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할 것
- (c) 정부 당국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할 것
- (d) 정책권고의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할 것
- (e) 국가인권위원회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것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 강화

■ 아동기본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2017, 2018 아동인권보고대회 주제: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복지서비스
감액부터 실행까지

복지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 일시	2022. 7. 14. (목) 14:00	배포 일시	2022. 7. 14. (목)
담당 부서 <총괄>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지연 (044-202-3410)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044-202-3429)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

-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총 5차 중 1차 토론회 개최) -

-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이 보호의 대상을 넘어 인격을 존중받고, 미래세대 주체로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해미)은 7월 14일(목) 오후 2시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총 5차)” 중 제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 법제도정책 권고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 지난 8년간 법제도정책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분석 및 평가 필요 (2014. 아동청소년인권팀 신설, 2016. 아동권리위원회 신설)
- 현장에서 필요한, 시기적절한 권고와 의견 표명 이행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 중요)
- “00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권고/의견표명 여부 점검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 권리 구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조사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
-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증인의 보호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 권리 구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진정 → 연령, 언어, 장애, 지역,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아동·청소년친화적 진정체계 마련
- 신속한 구제 (진정에서 결정까지 약 1년 소요)

“시간의 경과는 아동과 성인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지체 또는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아동에게 특히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동과 관련되거나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나 과정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4호, para. 93.)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3) 방문조사

- **아동청소년 관련 구금·보호시설:** 단계적 + 장기계획 필요 (선택적 조사 X)
 -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 **국가인권위원회 내 부서 간 연계와 협력 필요**
 - ✓ 기획조사팀 → 아동청소년인권과
 - ✓ 결국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 →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 예) 202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3.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4) 홍보와 협력: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와 협력

- 아동권리 교육
- 인식개선 활동

“(l)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의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론 매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이 분야의 연구 및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고, 후원하는 것
(m) 당사국에게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협약의 원칙과 규정이 널리 알려지도록 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는 협약 제42조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및 일반 대중이 협약의 규정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그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감시하는 것”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호, para. 19.)

4. 나가며

- **주요 핵심 과제 선정 필요**

-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 v. 현안 대응 등 단기과제 구분하여 전략적 추진 필요
-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인권과의 주요 핵심 과제는?


일반이행조치
 일반원칙
 시민권과 자유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활동
 특별보호조치

4. 나가며

-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현장에서 필요한, 시기적절한 권고와 의견 표명 이행
-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포럼' 한시적 운영
- 아동인권보고대회

Thank you

 사단법인 두루

- | 장애인권
- | 아동·청소년인권
- | 국제인권
- | 사회적경제
- | 환경

duroo.org

토론문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아동권리옹호실 실장)

지난 2019년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가 그간 거둔 아동인권 정책성과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여러 사항들에 대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아동과 관련된 주요과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 학교 밖·위기 청소년 안전망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강화, 디지털·미디어교육 확대 등으로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주요 이슈 해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전히 아동을 지원의 대상, 수혜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인권 인식에 대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인권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31년 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 아동을 보호의 대상,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자로 명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그동안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아동의 권리를 포괄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가의 통합적 비전과 목표, 책임과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이러한 전환기에서 우리나라 아동인권 이행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과제를 제시해주신 두 분의 발제를 토대로 국내외 현장에서 아동인권옹호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아래의 두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1. 학대피해 아동인권 보호 강화 과제

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계획 중 학대피해 아동인권 보호 강화 과제에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2021년 12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올해 6월 22일자로 시행된 동 개정법률은 가정폭력 이슈 대응에 아동중심 접근이 강화된 것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주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연계된 계기로 관련 부처간 협업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폭력 노출 법제화 이전부터 아동의 가정폭력 노출을 정서적 학대로 정의하고 교육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체계에서는 가정폭력 노출 아동을 포괄하는 실제적인 보호와 지원 계획이 부재합니다. 현재 정부의 가정폭력 대응체계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는 분절화 되어 있어 가정폭력 노출아동¹⁾이 학대피해 아동보호 및 지원 체계에서 누락,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동의 가정폭력 노출이란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할 때 같은 혹은 다른 공간에서 이러한 상황을 듣거나 목격하는 경우,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상황에 직접 개입하거나 혹은 폭력의 수단으로 자녀가 이용되는 경우, 폭력의 잔해물과 여파에 노출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한다.

신나래 외. (2022) 월드비전 가정폭력피해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 및 지원방안 연구. 월드비전; Edleson, J. L. (1999). Children's witnessing of adult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8), 839-870; Edleson, J. L., Shin, N., & Armendariz, K. K. J. (2008). Measuring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CEDV) Scal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0(5), 502-521.

가정폭력 대응 체계는 피해여성 보호와 회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정폭력 노출아동을 동반자녀로 구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이 유일하며, 피해아동 심리치료비는 시설 재량으로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동반 자녀 중 미취학아동이 33.7%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부재한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개별화된 사례 개입과 보호조치, 다양한 회복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점과 비교해 상당한 차별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 개정에 따라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각 시군구는 아동 최상의 이익과 비차별의 원칙에 따라 각 주체간 대응과 활동의 연계, 통합되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2.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에 아동의 참여 강화 과제

2019년 11월 월드비전, 플랜, 세이브더칠드런 등 여러 국제아동단체들은 ‘기후위기는 곧 아동인권의 위기다’라는 정책 브리프를 발간하여 기후위기가 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은 기후위기로 초래되는 물부족, 식량안보위협에 더 취약합니다. WHO는 기후위기로 인해 2030년까지 급성 혹은 만성 영양실조 5세 미만 아동이 75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부족과 오염은 아동의 수인성 질병 위협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손상은 교육권의 위협으로 이어져 아동의 전 발달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은 기후위기의 영향과 피해를 더 많이 받는 불평등한 구조를 심화 시킵니다.

아동이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지만 기후와 인권, 즉 기후정의 담론에서 아동인권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전문에 ‘아동권리’가 언급되긴 하였으나, 이후 각국의 기후 행동에서 아동의 인권이 존중 및 증진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2021년 유니세프의 조사에 따르면, 각국에서 제출한 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34%만이

아동에 민감한 정책(Child-sensitive)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NDC 결정에 참여한 경우는 12%, 청소년/청년(Young people)은 40%²⁾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21년 9월 제정, 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원칙 중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세대가 저야할 책임이라는 세대간 형평성 원칙,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 부문, 지역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위원들은 관련부처의 장관 등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은 명시하고 있으나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No.26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인권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with a special focus on climate change)’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2023년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국 아동의 포괄적 컨설팅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제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논평 No.26 채택 이후 이를 국내 정책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후위기의 원인과 영향은 정의롭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모든 아동이 기후 위협으로부터 보호 받고 권리가 존중되도록, 그리고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가장 오래 받게 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2) UNICEF. (2019). Making Climate and Environment Policies for &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